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71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2. 8. 22. B에게 12,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각 연 25.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 2. 16. 주식회사 D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906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6. "피고는 원고에게 13,328,020원 및 그 중 10,763,986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부친인 E은 2019.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및 B은 2020. 1.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1184호로 2019. 8.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는 2021. 2. 8.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B은 광주지방법원 2021개회51190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1. 7. 13.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10. 26. A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바. B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은 직권으로 B을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 사건 소송을 그 소제기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B이 이를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고흥군 대 393㎡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8.1㎡ 끝.

